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 60호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창 원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민원문서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민원 창구 직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 중 주민등록표 등
· 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문을 신설함.(안 제7조제1항제11호)
- 나. 별표 1의 제목을 제명에 맞게 개정함.(안 별표 1)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055-225-5374,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kimhk7@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
----------	----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의 원 : 전홍표 · 감규상 · 권순재 · 김원일 · 류성국
문순규 · 박연정 · 박현재 · 배명갑 · 백승규
변보미 · 이우완 · 장병운 · 지상록 · 진형익
차중현 · 홍용채 의원(17명)

1. 제안이유

민원문서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민원 창구 직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문을 신설함.(안 제7조제1항제11호)
- 나. 별표 1의 제목을 제명에 맞게 개정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나. 관계 법령
- 다. 현행 조례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 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별표 1의 제목 중 “제증명 등의 종류와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를 “각종 증명 등의 종류와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종 증명 등의 종류와 수수료 (제3조 제1항 관련)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1.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의한 증명			
(1) 토지(임야)대장	1건	500원	
(추가 1장당)		(100원)	
(2) 건축물대장	1건	500원	
(3) 농지원부	1건	1,000원	
(4) 세목별과세증명	1건	600원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600원	
(6) 자동차등록원부	1건	300원	
(7) 건설기계등록원부	1건	500원	
2. 문화공보관계			
(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원	
(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3)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4) 영화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5)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6) 비디오물 제작업,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7) 비디오물 제작업, 배급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8) 공연장의 등록 신청	1건	10,000원	
(9)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1)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12)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3)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4)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5)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6)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1건	20,000원	
(17)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	1건	5,000원	
(18)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19)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0)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21)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22)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23)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4)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60,000원	
(25)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청	1건	30,000원	
(26)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50,000원	
(27)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청	1건	15,000원	
(28)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29)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30)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31) 애니메이션업 신고	1건	20,000원	
(32) 애니메이션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 지방세관계			
(1) 세목별 과세증명	1건	800원	전자민원 (인터넷) 발급의 경우 에는 무료
(2) 미과세증명	1건	800원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4. 토지관리관계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원	
(2) <삭제>			
(3) <삭제>			
(4)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법인)	1건	30,000원	
(5)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개인)	1건	20,000원	
(6)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7)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원	
(8)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5.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허가 신청	1건	500원	
(2)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사용)허가	1건	5,000원	
(3) 소하천 준공검사 신청	1건	1,000원	
(4) 소하천 점사용기간 연장 신청	1건	1,000원	
(5)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하천,공유수면,소하천의 점용 허가	1건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6) 기타하천, 공유수면, 소하천의 토지점용(경작목적 및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제외)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7)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8)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유수(지하유수)의 점용(농업용수제외)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9)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의배수, 주수(단,농업용수의배수,주수제외)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10) 토석, 사력 등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11)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12)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내에서의 스케이트장, 유선장 설치 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13) 비관리청의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공사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14)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 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15)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허가사항 변경 신고	1건	500원	
(16)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한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점용 허가	1건	1,000원	
6. 도시계획관계			
(1)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원	
(2)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500원	
(3)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원	
(4) 체비지 분할 신청	1건	500원	
(5)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건	500원	
(6) 환지예정분할	1건	500원	
(7)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건	500원	
(8)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건	500원	
(9)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	1건	500원	
(10) 토지대금 완납증명	1통	500원	
(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칼라 발급)	1필지	1,000원 (1,500원)	
7. 건축주택관계			
(1)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1통	300원	
8. 농수산관계			
(1)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	1건	300원	
(2) 농산제조업의변경허가신청	1건	500원	
(3) 관상수목 자가생산확인서	1통	300원	
(4)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통	800원	
(5) 어업면허신청	1건	5,000원	
(6) 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1건	3,000원	
(7) 어업권(지분)이전 인가 신청	1건	4,000원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8)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1건	2,500원	
(9)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1건	3,000원	
(10) 관리선 사용의 지정 및 어선사용 (변경)승인 신청	1건	1,000원	
(11) 시설철거의무 면제신청	1건	3,000원	
(12)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교부 신청	1건	800원	
(13) 연안어업 허가 신청	1건	2,500원	
(14) 구획어업 허가 신청	1건	4,500원	
(15)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변경허가) 신청	1건	2,000원	
(16)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변경허가) 신청	1건	1,000원	
(17) 어선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	1건	3,000원	
(18)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	1건	5,000원	
(19)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	1건	9,000원	
(20) <삭제>			
(21) 어업허가유예신청	1건	1,500원	
(22) 어업변경 허가 신청	1건	2,000원	
(23)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원	
(24) 어업신고	1건	1,500원	
(25)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26)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 신청	1건	1,000원	
(27)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	1건	1,000원	
(28)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신청	1건	1,000원	
(29)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 신청	1건	3,000원	
(30)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원	
(31) 유해어업사용허가신청	1건	3,000원	
(32) 어업휴업신고	1건	1,000원	
(33) 어업개시신고	1건	1,500원	
(34)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1건	3,000원	
(35) 내수면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	1건	3,000원	
(36) 유료낚시터지정	1건	3,000원	
(37) 증서등의 발급신청	1건	1,000원	
(38) 어획물운반업등록신청	1건	5,000원	
(39) 어획물운반업변경등록신청	1건	2,000원	
(40) 근해어업허가 신청	1건	4,500원	
(41)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1건	2,000원	
(42)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1건	30,000원	
(43)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9. 보건·환경위생관계			

구 분	기준	수수료	비 고
(1) 의료기관 개설 허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건	100,000원	
(2) 의료기관 개설장소이전 허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건	40,000원	
(3)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1건	40,000원	
(4) 의료기관 개설장소이전 신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1건	20,000원	
(5)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6)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청	1건	10,000원	
(7)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8)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청	1건	10,000원	
(9)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	1건	300원	
(10)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2,000원	
(11) 습관성 의약품 원료 양도 승인 신청	1건	500원	
(1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13)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10. 상수도관계			
(1)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 분의 1로 한다.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2)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4)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1,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2,000원	
11. 교통관계			
(1)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1건	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신규, 변경)	1건	2,0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1건	2,0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신청	1건	2,000원	
(5)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2,000원	
12. 산업경제관계			
(1) <삭제>			
(2)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	1건	20,000원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원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4) <삭제>			
(5)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원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록신청 (조건부등록신청)	1건	30,000원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신청 (조건부등록신청)	1건	20,000원	
(8)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신청 (조건부등록신청)	1건	10,000원	
(9) 공장등록증명서	1건	1,000원	

※ 비고 : 이 조례에 표기되지 않은 수수료는 개별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현행	개정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 10.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별표 1] <u>제증명 등의 종류와 수수료</u> (제3조제1항 관련)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u>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u>각종 증명 등의 종류와 수수료</u> (제3조제1항 관련)

참고

관계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창원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검사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 ① 각종 증명 등의 종류와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정보공개에 드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별표 1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문서와 장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창원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렇지 않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각종 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② 창원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였을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을 감면할 필요가 있을 때
-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제8조 삭제<2024. 12. 20.>

[별표 1] <개정 2012.7.16. 2013.10.30. 2015.8.7. 2016. 4. 4., 2017. 8. 14. 2021. 10. 1., 2022. 3. 31.>

제증명 등의 종류와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1.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의한 증명			
(1) 토지(임야)대장	1건	500원	
(추가 1장당)		(100원)	
(2) 건축물대장	1건	500원	
(3) 농지원부	1건	1,000원	
(4) 세목별과세증명	1건	600원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600원	
(6) 자동차등록원부	1건	300원	
(7) 건설기계등록원부	1건	500원	
2. 문화공보관계			
(1) 영화상영권 등록 신청	1건	20,000원	
(2) 영화상영권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3)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4) 영화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5)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6) 비디오물 제작업,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7) 비디오물 제작업, 배급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8) 공연장의 등록 신청	1건	10,000원	
(9)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1)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12)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3)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4)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5)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6)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1건	20,000원	
(17)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	1건	5,000원	
(18)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19)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0)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21)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22)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23)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4)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60,000원	
(25)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청	1건	30,000원	
(26)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50,000원	
(27)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청	1건	15,000원	
(28)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29)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30)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31) 애니메이션업 신고	1건	20,000원	
(32) 애니메이션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 지방세관계			
(1) 세목별 과세증명	1건	800원	전자민원 (인터넷) 발급의 경우 에는 무료
(2) 미과세증명	1건	800원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4. 토지관리관계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원	
(2) <삭제>			
(3) <삭제>			
(4)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법인)	1건	30,000원	
(5)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개인)	1건	20,000원	
(6)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7)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원	
(8)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5.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허가 신청	1건	500원	
(2)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사용)허가	1건	5,000원	
(3) 소하천 준공검사 신청	1건	1,000원	
(4) 소하천 점사용기간 연장 신청	1건	1,000원	
(5)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하천,공유수면,소하천의 점용 허가	1건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6) 기타하천, 공유수면, 소하천의 토지점용(경작목적 및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제외)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7)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8)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유수(지하유수)의 점용(농업용수제외)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9)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의배수, 주수(단,농업용수의배수,주수제외)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10) 토석, 사력 등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11)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12)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내에서의 스케이트장, 유선장 설치 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13) 비관리청의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공사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14)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 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15)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허가사항 변경 신고	1건	500원	
(16)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한 하천, 공유수면, 소하천 점용 허가	1건	1,000원	
6. 도시계획관계			
(1)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원	
(2)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500원	
(3)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원	
(4) 체비지 분할 신청	1건	500원	
(5)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건	500원	
(6) 환지예정분할	1건	500원	
(7)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건	500원	
(8)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건	500원	
(9)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	1건	500원	
(10) 토지대금 완납증명	1통	500원	
(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칼라 발급)	1필지	1,000원 (1,500원)	
7. 건축주택관계			
(1)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1통	300원	
8. 농수산관계			
(1)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	1건	300원	
(2) 농산제조업의변경허가신청	1건	500원	
(3) 관상수목 자가생산확인서	1통	300원	
(4)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통	800원	
(5) 어업면허신청	1건	5,000원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6) 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1건	3,000원	
(7) 어업권(지분)이전 인가 신청	1건	4,000원	
(8)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1건	2,500원	
(9)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1건	3,000원	
(10) 관리선 사용의 지정 및 어선사용 (변경)승인 신청	1건	1,000원	
(11) 시설철거의무 면제신청	1건	3,000원	
(12)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교부 신청	1건	800원	
(13) 연안어업 허가 신청	1건	2,500원	
(14) 구획어업 허가 신청	1건	4,500원	
(15)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변경허가) 신청	1건	2,000원	
(16)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변경허가) 신청	1건	1,000원	
(17) 어선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	1건	3,000원	
(18)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	1건	5,000원	
(19)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	1건	9,000원	
(20) <삭제>			
(21) 어업허가유예신청	1건	1,500원	
(22) 어업변경 허가 신청	1건	2,000원	
(23)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원	
(24) 어업신고	1건	1,500원	
(25)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26)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 신청	1건	1,000원	
(27)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	1건	1,000원	
(28)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신청	1건	1,000원	
(29)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 신청	1건	3,000원	
(30)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원	
(31) 유해어업사용허가신청	1건	3,000원	
(32) 어업휴업신고	1건	1,000원	
(33) 어업개시신고	1건	1,500원	
(34)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1건	3,000원	
(35) 내수면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	1건	3,000원	
(36) 유료낚시터지정	1건	3,000원	
(37) 증서등의 발급신청	1건	1,000원	
(38) 어획물운반업등록신청	1건	5,000원	
(39) 어획물운반업변경등록신청	1건	2,000원	
(40) 근해어업허가 신청	1건	4,500원	
(41)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1건	2,000원	
(42)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1건	30,000원	
(43)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9. 보건·환경위생관계			
(1) 의료기관 개설 허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건	100,000원	
(2) 의료기관 개설장소이전 허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건	40,000원	
(3)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1건	40,000원	
(4) 의료기관 개설장소이전 신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1건	20,000원	
(5)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6)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청	1건	10,000원	
(7)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8)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청	1건	10,000원	
(9)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	1건	300원	
(10)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2,000원	
(11) 습관성 의약품 원료 양도 승인 신청	1건	500원	
(1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13)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10. 상수도관계			
(1)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 분의 1로 한다.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2)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4)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1,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2,000원	
11. 교통관계			
(1)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1건	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신규,변경)	1건	2,0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1건	2,0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신청	1건	2,000원	
(5)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2,000원	
12. 산업경제관계			
(1) <삭제>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2)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	1건	20,000원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원	
(4) <삭제>			
(5)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원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록신청 (조건부등록신청)	1건	30,000원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신청 (조건부등록신청)	1건	20,000원	
(8)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신청 (조건부등록신청)	1건	10,000원	
(9) 공장등록증명서	1건	1,000원	

※ 비고 : 이 조례에 표기되지 않은 수수료는 개별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